# 지원사업규정

제정 2021. 03. 24.

#### 제1장 총 칙

#### 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「정관」제9조에 따른 재단법인 한살림재단(이하 "재단"이라 한다)의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(기본원칙)

- ① 지원사업을 위한 심사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.
- ② 지원사업은 전국적인 통일성과 지역적인 특수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.
- ③ 지원사업은 특정분야, 특정지역 및 특정기관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한다.
- ④ 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다른 지원기관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한다.
- ⑤ 효과적인 지원사업을 위하여 건당 지원한도액과 사업비의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.

# 제2장 지원대상자 등

### 제3조(지원대상자)

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(이하 "지원대상자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- ① 사회복지사업 및 기타 공익활동을 행하는 법인·기관·단체 및 시설(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을 포함하다)
- ② 사회복지사업 및 긴급구호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
- ③ 사회복지서비스 및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개인

# 제3조의2(지정기탁 지원대상자)

- ①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지원지역·지원대상자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하는 기부(이하 "지정기탁"이라 한다)의 경우 기부자가 지정할 수 있는 지원대상자는 제3조 각호의 지원대상자로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직접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지원전문기관인 경우 재단과 해당기관 간에 사업에 관한 별도의 협약을 한 후에 지정기탁 기부금품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# 제4조(지원사업의 종류)

- ① 재단이 행하는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  - 1. 공모사업: 재단이 그 주제를 정하여 공모형태로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사업
  - 2. 지정기탁사업: 지정기탁에 대하여 그 취지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
  - 3. 긴급지원사업: 재난구호 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 지원하는 사업
- ② 재단은 제1항의 지원사업 외에도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「정관」제4조 제1항의 목적 사업에 맞는 별도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## 제4조의2(지원협력기관)

재단은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익활동을 행하는 법인·기관·단체 및 시설 중에서 지원협력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

## 제4조의3(지원제외대상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.

- 1.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확정 된 사업. 다만, 이사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2.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비용
- 3. 정치·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
- 4.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
- 5. 「공직선거법」에 위반되는 경우
- 6. 그밖에 이사회에서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비용

# 제4조의4(지정기탁기부금품의 지원한도)

지정기탁기부금품은 지원대상자별로 연간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. 다만,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- 1. 개인: 1억원
- 2. 법인·단체 및 시설: 10억원

# 제3장 지원절차 및 평가

#### 제5조(지원사업의 과정)

지원사업은 지원기준 공고, 지원 신청 및 심의, 지원결정 통지 및 지급, 지원평가의 순으로 시행한다. 다만, 지원사업의 특성에 따라 일부 과정을 생략 또는 변경할 수 있다.

# 제5조의2(지원신청)

재단에 지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 그 밖의 구비서류를 재단이 정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
#### 제6조(지원사업의 심의·결정)

- ① 재단의 지원사업은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은 사무국에서 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업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- 1. 이사회 의결로 금액한도가 미리 정해진 사업
  - 2. 개인을 지원대상자로 지정하거나 지원금이 1천원 미만인 지정기탁사업
  - 3. 그 밖에 이사회가 결정을 위임한 사업
- ③ 이사 또는 감사는 자신이 재직(비상근 포함)하고 있거나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2조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·기관·단체 또는 시설이 제출한 지 원신청에 대하여는 그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- ④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을 심의함에 있어서 신청자의 사업수행능력, 사업의 필요성·파급성 및 실현가능성, 예산의 합리성 등에 관한 평가항목을 정하여 심의한다. 이 경우 사업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서류심사·면접심사·현장심사 등 단계별 심사과정을 정하여 심의하되,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일부 과정을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다.

#### 제7조(지원결정통지 및 지급)

-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지원금을 받을 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계약서 그 밖의 구비서류를 기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② 지원금은 재원의 과부족,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일시전액 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.
- ③ 지원금은 재원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한다.

# 제7조의2(지원에 따른 협조의무)

지원을 받은 자 또는 지원신청을 한 자는 재단이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사를 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.

#### 제7조의3(지원금 지급의 연기)
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.
  - 1. 제9조에 따른 지원 취소 및 환수 사유 해당여부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
  - 2. 지원대상자가 지원금 지급예정일 전일 일과마감시각 전까지 계약서 및 그 밖의 구비서류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
  - 3.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계획 등을 수정·보완하여야 할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

# 제8조(지원사업의 평가)

- ① 지원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, 다음 연도 지원사업 계획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
- ② 지원사업의 평가기준은 지원의 적절성, 사업목표 달성도, 문제해결 기여도 등으로 한다.

#### 제8조의2(사업결과보고서 제출)

지원금을 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재단 또는 재단이 지정하는기 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재단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제출기일을 연장하도록 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 제9조(지원 취소 및 환수)

-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 통지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  - 1. 제4조의3에 규정된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비용임이 발견된 경우
  - 2. 지원을 받은 자가 지원금을 목적 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
  - 3. 지원대상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
  - 4. 지원을 받은 자가 재단의 서류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불응한 경우
  - 5. 지원결정이 법·정관 또는 이 규정에 위반된 것임이 발견된 경우
  - 6. 지원을 받은 자가 당해 지원과 관련하여 재단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
  - 7. 그 밖에 이사회가 지원 취소 및 환수를 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
- ② 지원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③ 지원 취소에 따라 환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재단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납부기일을 연장하도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#### 제3장 회계기준 및 절차

#### 제10조(예산원칙)

- ① 예산계획은 직접사업비와 간접사업비로 나누어 수립한다.
- ② 간접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15%를 넘을수 없다.
- ③ 자부담이 있는 겨우 예산에 자부담을 포함하여 예산을 수립한다.

### 제11조(회계처리기준)

① 재단에서 정하는 회계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- 1. 지원금은 사업기간 내에 집행하여야 한다. 단 사업수행의 원인행위 및 실제 사업을 사업 종료시점까지 이루어졌고 그 대가의 지급일자(통장출금일)가 사업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것은 인정하되 그 기간이 14일을 넘기지 아니한다.
- 2. 지원금은 별도 통장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- 3. 자부담이 있는 경우 지원금 통장에 자부담 금액만큼을 입금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한다.
- 4. 예산계획에 작성한 산출근거를 기준으로 예산을 집행한다.
- 5. 각 단체는 사회복지법인일 경우 재무회계규칙(사회복지법인이 아닐 경우에는 단체에 맞는 해당 규칙)과 함께 근로기준법, 세법(법인세법, 소득세법, 부가가치세법) 및 관련 법규,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.

#### 제12조(사업비집행기준)

- ① 재단에서 정하는 사업비 집행 기준은 다음과 같다.
  - 1. 체크 및 신용 카드 매출전표, 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(반드시 사업자명의)만을 지출증빙자 료로 인정한다. 단, 부득이한 경우 3만원 이하 건에 한해 간이영수증을 인정한다.
  - 2. 강사의 경우 1) 강의와 관련된 약력 및 연구목록을 첨부하고 2) 강사료·사례비 등에 대해 서는 원천징수를 하며 3) 지급조서(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계좌번호 포함)를 받는다. 지원단체 직원과 소속 법인 상근 임원에게는 강의료 및 기타 비용을 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.
  - 3. 지원금으로 비품성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100만원이 초과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비교견적을 반드시 첨부하고, 구입 장비는 개봉 즉시 포장과 함께 사진촬영한 후 자료로 제출한다.
  - 4. 지원금으로 주류는 구입할 수 없다.
  - 5. 지원금의 발생 이자 및 카드 사용을 통한 캐쉬백은 반환하지 않고, 지원단체의 세입(잡수입)으로 처리하여 활용한다. 이자/캐쉬백 부분을 지원사업의 사업비로 사용할 경우, 지원사업비로 포함하여 처리한다.
  - 6. 사업 종료 후 미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재단의 안내에 따라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반납한다. 단 사업종료일 기준 잔액이 1,000원 미만일 경우 지원단체의 잡수입으로 처리하다.

#### 제13조(증빙자료 제출기준)

- ① 지출증빙자료는 예산계획상의 항목별로 분류하여 제출한다.
- ② 자부담 지출이 있을 경우 지원금과 자부담을 구분하여 지출증빙자료를 분류한다.
- ③ 지출증빙자료에는 지출과 관련된 일련의 서류(지출결의서와 영수증)를 제출한다.
- ④ 최종결과보고 제출 시 지출증빙자료에 증빙번호를 매겨 항목별 증빙번호 순서로 제출한다.
- ⑤ 영수증은 복사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.

# 제14조(지원금 전용기준)

- ① 본 재단의 사전 증인 없이 지원금에 대한 목간의 전용을 할 수 없다. 단 세목간의 지원단체의 편의에 따라 전용 가능하다.
- ② 지원금 전용절차는 아래와 같다
  - 1. 전용 전 사전에 본 재단으로 사업변경신청 공문 발송
  - 2. 재단 결정 통보문(승인/불가) 접수

# 제15조(결과보고 제출 기준)

- ① 결과보고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다
  - 1. 결과보고 제출 공문
  - 2. 결과보고서(재단서식)
  - 3. 예산 세부집행 내역서(엑셀파일)
  - 4. 지원금 통장 사본(집행내역 출력부분)
  - 5. 지출증빙자료(지원금과 자부담 영수증 사본으로 제출, 처리방법은 회계처리기준 참고)
  - 6. 사진파일(JPG 파일 등을 압축하여 이메일로 제출)
  - 7. 기타 자료: 각종 인쇄물(프로그램 리플릿, 포스터, 발간자료 등), 신문기사, 보도자료 등
- ② 제출기한은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로 한다.
- ③ 제출방법은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한다.

#### 부칙<2021.03.24>

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.